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16.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7. 10. 16.
 다. 상정일자 : 2007. 10. 22.(제1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팀장 홍완식)

가. 제안사유

- 의림지권 관광개발과 연계한 건강한 자연도시 조성과 관리를 통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용두산 산림욕장내에 재경부 소유의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용두산 산림욕장 내 공유재산 취득(2필지, 34,143m²)
 - 송학면 도화리 산 167-2번지, 천, 5,013m²
 - 송학면 도화리 산 167-5번지, 천, 4,855m²

3.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용두산 산림욕장을 조성사업에 따라 1988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1988년부터 2006년까지 산림욕장 및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 재경부 소유 부지내에 휴게·편의시설, 체육시설 및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2007. 5. 21일 재경부 국유재산과 및 2007. 5. 25일 충북도 회계과로 부터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수신청 이행안내 공문을 우리시

회계팀에서 접수, 2007. 6. 20일 사업시행부서인 산림관리팀으로 관련 공문을 통보하여 금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 계획)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2007. 7. 13일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취득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 취득재산의 추정가격은 공시지가가 2필지 9,868㎡에 추정가격은 공시지가가 34,143천원이 되겠습니다.
-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시행전에 대상부지에 대한 공적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사용승락 또는 매입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수시민의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변경안을 동의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제천시에서 사용하고 도유지나 국가재산을 전수조사해서 5개면 계획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땅 값이 오르기 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박성하 의원)
 - 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회계팀장 홍완식)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부. 끝.